

매일경제

2016. 3. 23.

이상일 기계설비건설협회장 “기계설비도 첨단빌딩 핵심”



“입찰 방식을 개선해 기계 설비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계설비가 고도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 독립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는 1950~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가스, 자동제어 등을 통칭한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혈관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지만 마감재 등에 가려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잠실 제2롯데월드 총공사비(약 2조원) 가운데 기계설비가 약 35%(7,000억여 원)를 차지한다. 이 회장은 “건설사가 예정 가격 대비 70~80% 선에서 공사를 낙찰받으면 기계설비 업체는 하도급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50% 선에서 낙찰받아 기계설비 품질을 높이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외국처럼 발주자가 건설·기계설비·전기통신 등 분야별로 분리발주하거나 ‘지명 하도급(NSC)’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 기계설비를 반영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과 공사 완성도가 높아지고 기계설비 업체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도 NSC 방식으로 기계설비 업체를 선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기계설비가 큰 변수다. 이 회장은 “국내 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비 가운데 기계설비가 71%, 30조원 규모”라며 “기계설비 공사 품질만 개선해도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는 현재 7,400여 개 기계설비·가스시설 관련 업체가 가입돼 있다. 

임영신 기자

사법부도 사업장 안전사고 '원청사 책임' 폭넓게 인정

최근 근로자 사망 1심부터 원청에 산재책임 범위 확대

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사업장 안전에 대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근로자 사망사건 두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잇따라 원청사에게만 처벌을 내리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청의 산재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20대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원청사 차원의 산재책임 노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산재사건에 대해 1심 단계부터 원청사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A법원 형사부는 2015년 1월 근로자 2명이 작업도중 사망한 것에 대해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원청사에 1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하청사 2곳은 무죄를 받았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란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를 뜻한다.

B법원도 2015년 작업장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같은 죄목으로 원청사에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해 11월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하청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원·하청의 책임 여부를 꼼꼼히 챙긴다"며 "과거엔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사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젠 검찰과 법원 모두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자'부터 특정짓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3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산단 폭발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사인 대림산업에 201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안법 위반 혐의를 인

정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법원은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수물사고'에서도 원청사인 중흥건설 현장소장에게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대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사법부가 '원청사의 재해예방 책임'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법원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하려고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일 양형 기준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게 특징"이라며 양형 기준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법부가 안전관련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다면, 정부는 안전관련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은 원청사가 해야 할 산재 예방조치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사는 하청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의 모든 장소에 대해 산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의 20곳으로 한정됐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추진 여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건설경제

2016. 2. 23.

이슈분석 > 건설현장 현실 고려한 '설계변경' 첫 인정 ... 의미는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가” ... 기술적부분 반영

〈인원·장비 추가 투입〉

‘이의제기 금지합의서’도 발주처가 일방적 작성 ... 법원, 증거로 인정 안해
발주처-시공사 합리적 협업 문화 조성 기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수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장은 바쁘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추가공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설계변경계약’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공공 발주처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고, 시공사 역시 ‘을’의 위치에서 서류를 남기자고 끝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K사가 서울시 S구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 사건 역시 설계변경은 없었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서면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설계변경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 S구의 요구로 공사시방서 보다 작업시간이 단축됐고, 그만큼 공사에 투입한 인원·장비가 늘어난 건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K사 측 변론을 맡은 손수일, 전선에 변호사(법무법인 로콜)는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게 설계 변경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간접설계변경과 관련한 국내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고 말했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건설현장’의 세밀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법원이 고려해 설계변경으로 인정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는 “그동안 설계변경 구


두약정을 인정한 판례가 드물게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감리원)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처럼 법원이 구두증거를 받아들이고 설계변경을 인정한 사례는 특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할증률도 209%를 인정했다. 발주처가 애초 적용하려던 할증률은 25%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많은 교통량 때문에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하다 보니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209%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할증률이란 공사 자재의 운반, 시공 중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충하기 위해 정해놓는 기준이다.

이의제기 금지 합의서 같은 실질 증거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대해 “피고(S구)가 일방적,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K사가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기술적 부분을 들여다보고 할증률을 제시한 것으로, ‘불공정 합의서’ 같은 건설현장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반갑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가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업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